

(國) (外) (事) (件)

營業上の利益과 商品混同

<日本最高裁判所 1981年 10月 13日 判決, 1979年(才)第145號>

1. 上告人: Y(ヤ産業(株)) 外
1名

2. 被上告人: X(日本 メドナルド
(株))

3. 判決主文: 上告を棄却한다.

4. 事件概要

被上告人인 X는 上告인인 Y가
製造販賣하고 있는 商品인 햄버거
의 容器, 包裝, 廣告 및 自動販賣
機 第1目錄 내지 (4)記載의 各表示
를 使用하였으므로 이를 使用한 햄
버거를 販賣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
이들 各表示를 抹消하고 謝罪廣告
를 掲載하는 한편 Y에게 損害賠償
을 支拂하라고 請求한 事件이 本件
이다.

1審判決은 Y標章(1)의 使用禁止
請求에 대해 (1)의 標章使用을 中
止하고 있는 Y에게 禁止理由가 없
으며 Y標章(2), (3), (4)의 使用禁
止請求에 대해서는 (A)X標章의
周知性有無에 대해 X標章(나),
(다), (라)도 X의 營業을 眼하는
表示로서 널리 認識되어 있다는 事
實이 없으므로 널리 認識되어 있다
고는 認定할 수 없다.

X標章(가)와 Y標章(2), (6), (4)
와의 類型에 대해서도 서로 類似하
다고는 할 수가 없다. 또 Y標章
(나), (다), (라)와 Y標章(2), (3),
(4)와의 類型에 대해서는 「ヤ」의
呼稱, 觀念에서 Y의 標章과 모두
類似하다.

그래서 X商品과 Y商品의 混同
에 대해서 Y는 自動販賣만에 의하
여 햄버거만을 販賣하고 있으므로

그 販賣方式은 X의 그것과 전혀
다르기 때문에相互의 商品이 混同
될 수는 없다. 따라서 下正競爭防
止法 1條 1項, 2項에 의거한 請求는
理由가 없으며 또 同法 1條의 2에
의거한 損害賠償請求도理由가 없
으므로 棄却하였던 바 東京高法은
X의 請求을 一部 認容, 一部 棄却
하였다.

즉 商品햄버거에 대해 第1目錄(1)
의 標章의 使用禁止請求는 原審과
同一理由로 理由가 없다 하였고 X
가 使用하는 第3目錄(가)(마)(아)
의 各標章은 X의 製造販賣하는 햄
버거 등의 商品 내지 그 營業을 表
示한다 하여 周知著名이 되어 있던
바 Y가 使用하는 第1目錄(2)(3)의
各標章은 「ヤ」의 稱呼가 發生한다.
또 商品햄버거에 使用되어 「ヤ」의
햄버거에 대한 概念이 發生하므로
X의 이 標章과 稱呼, 觀念에 類似
하며 商品의 混同이 蒙起될 念慮가
커서 現實上으로도 混同이 생기게
할 事實이 認定되는 以上 Y의 行
爲에 따라 X의 營業上の 利益에
害를 끼칠 염려가 있다. 더우기 商
標權行使의 抗辯도 失當이라고 判
示하였다. 그래서 Y가 上告한 것
이다.

5. 判決要旨

1) Y가 使用하는 本件標章이 日
本에서 널리 認識되어 顯著한 識別
力이 있는 周知의 標章이라고 인정
하기에 이론 經緯, Y가 使用하는
本件標章을 使用하게 된 經過 및 이
들 兩者의 時間의 先後關係등의 事

實과 이에 따른 原判決의 說示에
비추어 原審은 所論 Y의 主張을
排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
原判決에 所論의 違法은 없다.

2) 不正競爭防止法 1條 1項 1條
에서 말하는 商品의 混同事實이 인
정되는 경우에는 特段의 事情이 없
으면 營業上の 利益을 害치게 될
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
趣旨의 原審의 判断은 正當하다고
是認할 수가 있다. 또 本件에서 이
特段의 事情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
原審의 認定判断은 原判決擧示의
證據關係로 비추어 正當하다고 是
認할 수가 있다.

3) 商標權은 指定商品에 대해 當
該登録商標를 獨占的으로 使用할
수가 있음을 그 内容으로 한 것이
며 指定商品에 대해 當該登録商標
에 類似한 標章을 排他的으로 使用
하는 權能까지를 包含하는 것은 아
니다. 다만 商標權者에게는 이같이
類似한 標章을 使用하는 者에 대해
여 商標權을 侵害한다고 그 使用의
禁止를 要求하는 따위가 인정되는
것에 不遇하므로 本件登録商標와
類似한 本件標章을 Y가 使用함은
不正競爭防止法 6條에서 말하는 商
標法에 의한 權利行事로 認定되는
行爲에 該當한다고 解釋해야 하며
이와 同一한 趣旨의 原判決에 所論
의 違法은 없다.

6. 解說

上告判示에 異論이 없다는 衆論
이다.